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(은행제출용)

※ 서울시 복지시설인 경우 아래상품으로 개설불가(문의안내 : 3151-5900)

☐ **지원사업명 :** 2018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

1 보조금전용통장

- 상 품 명 : 우리보조금관리통장
- 예금과목: 보통/기업자유, **(종합통장상품코드(000-1137-00))**, 보조금통장 종류 -1-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
  * **상품변경 가능하며 보조금이 기입금된 경우**, 0214거래(고객등급 및 수수료 면제 특인거래) 처리 필요 (고객등급코드 445000, 등급적용기간 : 당일~익년 해당월 15일)
  * 자부담통장은 일반 요구불계좌 개설로 신규(자부담통장은 타행도 이용 가능)

2 보조금 전용카드

- 보조금전용 체크카드
  개인(223231), 단체/법인(223227)
- 자부담전용 체크카드
  개인(226402), 단체/법인(226415)

* 우리은행 자부담카드 발급시 지출결의서 작성 용이함(자부담카드는 타행도 이용 가능)

3 인터넷뱅킹 가입 및 스피드계좌 등록

☐ 보조금 전용통장 인터넷뱅킹 가입 및 **스피드계좌 등록(1230거래, 07001)**
-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
- 스마트뱅킹 가입시 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
- 원터치알림서비스 가입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알림서비스 가능(무료)

☐ **제출서류 (계좌개설, 체크카드,인터넷뱅킹)** ※ 원본서류 제출요망

구 분	개 인	단 체	법 인
본인 또는 대표자	·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 등) · 도장	·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·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· 도장	· 사업자등록증 ·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· 법인인감증명서 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·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
대리인	· 통장개설만 가능 - 본인의 실명확인증표(사본가능) -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- 위임장 - 본인의 인감증명서 - 도장	·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·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·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· 도장	· 사업자등록증 ·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·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· 법인인감증명서 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·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

※ 유의사항
1. 법인인감증명서·법인등기부등본·개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)
2. 법인 및 단체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(다음중 하나)
   ·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 · 계좌개설 요청공문(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등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)
3. 비영리단체 통장신규 고객확인 업무시 설립목적 확인 필요 (준법:060-1120, 2015.03.17)
   → 정관 등 (홈페이지의 설립취지 등 출력도 가능)
4.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
   · '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' 제출(세무서발급)

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.

서울시 문화예술과 (직인/사인)

담당 주무관 성명 : 임현진 (연락처) 02-2133-2557

희망서울